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209667(본소), 2019나209650(병합),
2019나20967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58916(본소), 2020다258923(병합), 2020다258930(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209667(본소), 2019나209650(병합),
2019나209674(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7231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A

- 2. B
- 3. C
- 4. D
- 5. E
- 6. F
- 7. G
- 8. H
- 9. I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0. J

11. K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변론 종결 2020. 5. 12.

판결 선고 2020. 7. 7.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72310(본소), 70826(병합), 7909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부분의 원고(반소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본소] 1.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 C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아래에서 별지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말한다) 표1 부동산목록 기재 ① 토지(아래에서는 '별지 ① 토지'라 한다. 다른 부동산도 그 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중 31/6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별지 ② 토지 중 31/6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에게 별지 ③ 토지 중 31/1,238 지분에 관하여, 원고 F에게 별지 ③ 토지 중 31/1,238 지분에 관하여, 원고 G에게 별지 ④ 토지 중 31/6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H에게 별지 ⑨ 토지 중 31/6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I에게 별지 ⑩ 토지 중 31/6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J에게 별지 ⑫ 토지 중

775/37,1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K에게 별지 ⑫ 토지 중 1,085/37,140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 2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에게 별지 ⑦ 토지 중 31/6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와 B에게 각 별지 ⑧, ⑪ 각 토지 중 31/1,238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2. 1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①, ⑭ 각 토지를 원고 C의, 별지 ② 토지는 원고 D의, 별지 ③ 토지는 원고 E와 원고 F 각 1/2 지분의, 별지 ④ 토지는 원고 G의, 별지 ⑦ 토지는 원고 A의, 별지 ⑧, ⑪ 각 토지는 원고 A와 원고 B 각 1/2 지분의, 별지 ⑨ 토지는 원고 H의, 별지 ⑩ 토지는 원고 I의, 별지 ⑫ 토지는 원고 J 15,475/37,140 지분과 원고 K 21,665/37,140 지분의, 별지 ⑬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피고는 원고 J에게 55,349원, 원고 H에게 79,702원, 원고 D에게 88,558원, 원고 A에게 110,698원, 원고 B에게 110,698원, 원고 C에게 161,619원, 원고 1에게 210,326원, 원고 K에게 77,488원, 원고 E에게 38,744원, 원고 F에게 38,744원, 원고 G에게 95,20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8. 10. 26.부터 같은 목록 기재 ⑬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J에게 연 57,828원, 원고 H에게 연 83,272원, 원고 D에게 연 92,524원, 원고 A에게 연 115,655원, 원고 B에게 연 115,655원, 원고 C에게 연 168,856원, 원고 I에게 연 219,745원, 원고 K에게 연 80,959원, 원고 E에게 연 40,470원, 원고 F에게 연 40,479원, 원고 G에게 연 99,463원의 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추가하였다).

[반소] 피고에게, 원고 G은 232,980원, 원고 H는 77,290원, 원고 A은 119,270원, 원고 C은 450,380원, 원고 D는 214,340원, 원고 E와 원고 F은 공동하여 191,870원, 원고 I는 494,000원과 각 이 돈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각 2018. 10. 26.부터 별지 표1 중 '부동산 표시'와 '다수 지분권자'란 기재 각 위 원고들 해당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인도일까지 매년 원고 G은 241,980원, 원고 H는 80,750원, 원고 A은 124,610원, 원고 C은 467,780원, 원고 D는 222,620원, 원고 E와 원고 F은 공동하여 199,280원, 원고 I는 513,1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별지 ①, ②, ③, ④,

9, ⑩, ⑪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표2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 분배한다.

항소취지 :

○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공유물분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문 이유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쳐 쓴다.

2. 덧붙이는 부분(공유물분할 관련)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제1심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한 다음, 통상의 공유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그러한 조치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② 피고는 제1심의 현물분할이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공유관계의 형성 시기와 경위,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자들 사이의 접촉 경과와 그 결과, 각 토지의 가액과 점유사용 현황, AE과 피고가 제1심 판결문 별지 ⑬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방법 및 그 후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접촉 경과와 그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심 판결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제1심 심리 중인 2019. 5. 15.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예비적청구 대상물에 제1심 판결문 별지 표1 순번 ⑬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하지 않은

대상물을 판단대상으로 삼았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 주장처럼 일부 인지액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재판의 효력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871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쳐쓰는 부분(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4쪽 네째 줄부터는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피고는 일부 원고들을 상대로 그 원고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제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피고 역시 점유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추가하였다(공유물분할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추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 점유자들은 오랜 기간 각 점유부분을 건물 소유를 위해 독립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오면서 그로 인한 이득을 서로 청구하거나 관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과 그와 관련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관계는 조만간 해소될 예정이고, 피고는 공유관계 해소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던 2017. 10. 뒤늦게 제1심 판결문 별지 표1 ⑬ 토지를 취득하였기에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지분비율에 따라 형식적으로 산출되는 서로 상환해야 할 액수 자체나 그 차액이 얼마 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물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상호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공유물에 관한 원고들의 본소 주위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본소 예비적청구는 모두,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 피고의 반소청구 중 그에 관한 부분은 결론이 달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이규

판사이흥권

판사이효두

별지